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우리나라 화물운송업은 개인 운송업과 일반 운송업으로 나누어지며, 개인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은 위·수탁제로 운영되고 있음. 위·수탁제는 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대여하는 형태로, 운송사업자 중 위·수탁차주에게 일감은 제공하지 않고 위·수탁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위·수탁전문회사가 많으며, 위·수탁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미반환하는 등의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도 여전한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운송사업자에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 시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선량한 위·수탁차주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 해당 위·수탁차주에게 임시허가를 함으로써 화물운송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밖에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 항목을 정할 시,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단체 또는 협회 등에 납부하는 비용은 화물운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안전운송원가를 산정토록 하고자 함.

한편, 운송사업자 단체인 협회가 대폐차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일부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제도 악용 및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에 취약한 상황
이므로, 대폐차 업무 위탁 기관을 국토부가 지정 고시토록 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안전운임위원회가 안전운송원가 비용을 고려 시,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단체 또는 협회 등에 납부하는
비용은 제외(안 제4조의6제1항제4호)
- 나.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
서 위·수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수탁차주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신설(안 제9조의11제2항 신설)
- 다.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토록 변경(안 제1
5조제1항 신설, 제15조제2항제1호 삭제)
- 라.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16
조)
- 마. 실적이 없는 위·수탁전문회사에게도 실적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최
소운송의무 기준 위반 시 차량 감차 기준을 신설(안 별표 1)
- 바. 운송사업자가 실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과징금 액
수를 상향하고, 법 제11조제24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
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액을 상향(안 별표 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00. ~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제1항제4호 중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화물운송”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단체 또는 협회 등에 납부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9조의11의 제목 “(위·수탁계약 해지 절차의 예외)”를 “(위·수탁계약 해지 절차의 예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0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표 5 제2호자목2)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제2호차목20)의 처분기준란 기호(○) 중 “사업”을 “위반차량 감차 조치,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2호의2	○ 1차: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3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60일) ○ 3차 이상: 감차 조치(신고의무미이행률×보유대수)
--	------------------	---

별표 1 제2호저목의 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감차 조치(최소운송의무미이행률×보유대수)

별표 1 제2호 비고 제2호가목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text{ 신고의무미이행률} = \frac{\text{실적신고대상금액} - \text{실적신고금액}}{\text{실적신고대상금액}}$$

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미이행률을 1로 본다.

(다만,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 제5항 부터 제7항에 따라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위 표 어목, 저목에 따라 감차하는 경우 운송계약금액이 낮은 차량부터 감차조치(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이 오래된 차량부터 감차)

별표 2 제2호가목러)를 다음과 같이 한다.

러)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0 이하	1,000 이하
---	----------	----------

별표 2 제2호가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2	2,000	-
--	-----------------	-------	---

별표 2 제2호가목9)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자목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3)(종전의 자목2)) 위반행위란 중 “1)”을 “1), 2)”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1조제2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 가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제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u>화물의 안전한 운송</u> 에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위원 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서 신설>	제4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 가 등)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화물운송</u> ----- ----- ----- --. <u>다만, 운송사업자 또는</u> <u>위·수탁차주가 자발적으로 가</u> <u>입한 단체 또는 협회 등에 납</u> <u>부하는 비용은 제외한다.</u>
② (생 략) 제9조의11(위·수탁계약 해지 절 차의 예외)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11(위·수탁계약 해지 절 차의 예외 등) ①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40조의3제3항제2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2 호, 제3호,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권한의 위탁) <신 설>	제15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1. <u>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u> 2. (생략) ② ~ ⑤ (생략)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u><후단 신설></u>	<u>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② ----- ----- ----- -----. <u><삭 제></u>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 <u>이 경우 별표 5 제2호자목2)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4017